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법부의 2021년 사업내용 보고

2022. 3.

법원행정처

I. 보고 배경

- 제13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2021년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 정책 논의’ 안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는바 그 결정 내용에 따라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법부의 2021년도 사업내용을 보고함

〈제13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정사항〉

- 향후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법부의 전년도 사업내용을 다음해 3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정기회의에서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II. 2021년 사업내용

1. 법원행정처 추진 사항

가. 「사법부의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실시 중

■ 개요

- 제15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통해 사법부의 성평등 문화의 실태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이에 관한 정책 제언을 받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진행 중

■ 연구 목적



성인지 관점에서 사법부 성평등·성폭력(희롱) 관련
제도와 조직문화 실태 파악



조직 특성에 맞는 점검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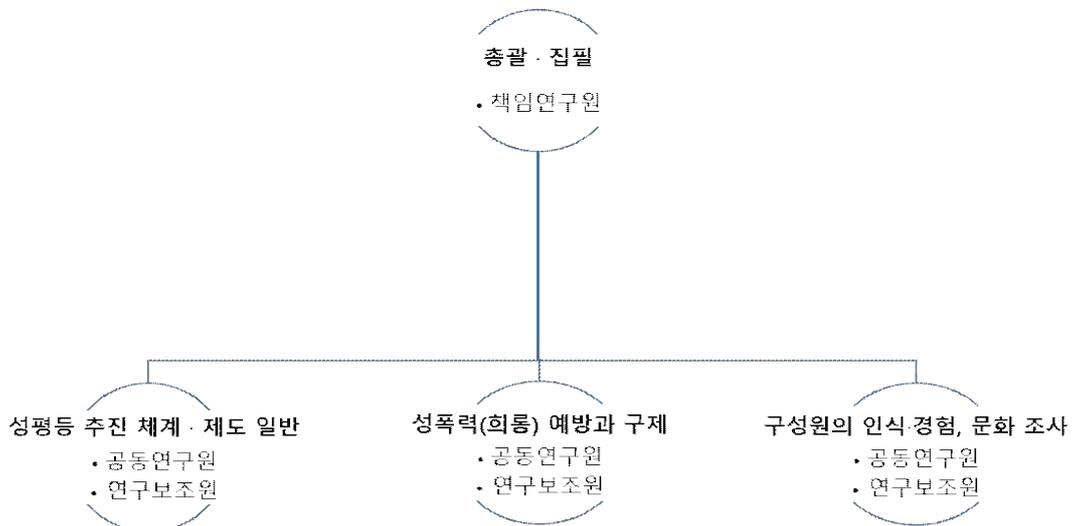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과 향후 점검 과제 제시

▣ 현재까지의 진행 경과

- 2021. 12. 20. 계약 체결(용역금액: 약 9,996만 원)
 - 계약방식: 경쟁 입찰방식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2021. 12. 20. ~ 2022. 6. 19.)
- 2022. 1. 7.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2022. 2. 선행연구·문헌 분석
- 2022. 3. 조사표 개발 및 설문조사 등 준비 중

▣ 연구 수행기관 ⇨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대표자: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 연구진 구성: 3개 분야별 책임구조





● 연구진 특징

- 모든 연구진이 다년간 여러 정부 조직을 비롯한 공적기구의 성평등 정책 추진과 성폭력 예방 체계에 대한 분석·대안 마련을 한 경험이 있음
- 법률실무가와 법·정책연구자, 사례와 조사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 분야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음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책임연구원 외에 3인의 공동 연구원이 전문분야 별 팀장 역할을 하면서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연구 내용

● 개관

문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지 관점의 조직운영 및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관련 선행 연구·문헌 분석• 타 기관 및 외국사례 참조
제도 파악과 문제점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통계, 규정 등 내부자료 수집·분석• 사전 자문회의 또는 행정처와의 협의를 통한 의견수렴 및 현황 파악
설문조사과 심층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법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설문조사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한 익명의 자기 기입식 조사, 온라인 조사)• 그룹별 심층면접

●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조직’ 차원의 ‘성평등’에 대한 통찰

- 이전까지 사법부의 ‘성평등’에 관한 연구나 조사, 정책 제언은 주로 i) 판단자로서의 법관의 성평등(차별) 인식이나 교육의 문제, ii) 고위·관리직의 여성 비율 문제, 즉 사법행정 중 일부인 ‘인사’에 국한해서 다루어져 왔음
⇨ 공적 기구로서의 ‘조직’ 차원의 행정 추진체계나 문화에 대한 진단은 이루어진 바 없음



- 반면 이번 연구는 i)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원리로서 ‘성평등’이 얼마나 자리 잡았고, 어떻게 구현되며,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점검함과 동시에, ii) 법원 구성원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가져야할 성 평등 관련 인식보다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인식과 행동규범에서 비롯되는 조직문화를 심도 있게 점검하고자 함

▣ 향후 계획

● 정책연구용역 완료

- 2022. 5. 수집 사례 분석 및 제도 설계
- 2022. 6. 최종보고서 제출

● 정책연구용역 결과 도출 후 후속조치

-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기초로 사법부 내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예정
- 수립된 계획 및 그 실시 사항은 제13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매년 3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할 예정
- 정책연구용역이 1회성 사업으로 종료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가 계속되도록 할 예정

나. 2021년 성폭력 등 제2차 피해 방지 지침 신설 및 추가 개정

1) 법원행정처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 개정(2021. 6. 14.)

▣ 개정 이유

- 성희롱, 성폭력 등 사건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의 정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와 대책 수립 및 교육실시 등에 관



하여 규정함

▣ 주요 내용

- “2차 피해”의 정의를 성희롱 등 관련 사건처리 및 회복의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및 신분상 부당한 인사 조치라고 규정
- 성희롱 등 관련 사건의 조사 시에는 양성평등지원관의 책무에 2차 피해에 관한 고충처리절차를 피해자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 재발방지 조치사항에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 “2차 피해 방지 대책” 포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1. ~ 3. (생략) <신설>	제3조(정의) 1. ~ 3. (현행과 같음) 4. “2차 피해”란 성희롱 등 관련사건 처리 및 회복의 과정에서 입는 <u>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신분상 불이익·부당한 조치를 말한다.</u>
제8조(성희롱 등 관련 사건의 조사) ① ~ ⑧ (생략) <신설>	제8조(성희롱 등 관련 사건의 조사) ① ~ ⑧(현행과 같음) ⑨ <u>양성평등지원관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에 관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u>
제12조(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제12조(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현 행	개 정 안
구성) ① 성희롱 등 관련 사건의 처리, 성희롱 등 방지를 위한 정책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양성평등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⑥ (생략)	구성) ① 성희롱 등 관련 사건의 처리,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 ③ (생략)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법원행정처장은 성희롱 등 관련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시 2차 피해 방지 내용을 포함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법원행정처장은 성희롱 등 관련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법원행정처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 추가 개정(2021. 8. 24.)

■ 개정이유

- 성희롱, 성폭력 등 사건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등을 추가하고 2차 가해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지침 개정



▣ 주요 내용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추가함(제6조 제목 및 제1항·제2항)
- 성희롱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양성평등지원관이 2차 피해 고충 처리절차 설명을 위한 구체적 조항을 추가함(제8조 제9항)
- 2차 피해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위자에 2차 행위자를 포함함(제15조 제1항·제3항)
- 성희롱 등 관련사건의 2차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2차 행위자를 재발방지조치 등 사항에 포함함(제16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제5호, 제2항·제3항)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p> <p>① 법원행정처장은 <u>성희롱·성폭력</u>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u>성희롱·성폭력</u>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u>성희롱·성폭력</u> 예방에 관한 법</p>	<p>제6조(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p> <p>① 법원행정처장은 <u>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u>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u>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u>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u>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u> 예</p>



현행	개정안
<p>령</p> <p>2. <u>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u></p> <p>3. <u>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u></p> <p>4. <u>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u></p> <p>5. <u>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u></p> <p>6. 그 밖에 <u>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u></p> <p>③ ~ ⑤ (생략)</p> <p>제8조(성희롱 등 관련 사건의 조사)</p> <p>① ~ ⑧ (생략)</p> <p>⑨ <u>양성평등지원관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에 관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u></p> <p>제15조(징계)</p> <p>① <u>법원행정처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u></p>	<p>방에 관한 법령</p> <p>2. <u>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u></p> <p>3. <u>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및 2차 피해자 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u></p> <p>4. <u>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u></p> <p>5. (현행과 같음)</p> <p>6. 그 밖에 <u>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성희롱 등 관련 사건의 조사)</p> <p>① ~ ⑧ (현행과 같음)</p> <p>⑨ <u>양성평등지원관은 제8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에 따라 2차 피해에 관한 고충처리절차가 진행됨을 설명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u></p> <p>제15조(징계)</p> <p>① <u>법원행정처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위자(2차 행위자 포함)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루어지도록</u></p>



현행	개정안
<p>② (생략)</p> <p>③ 법원행정처장은 성희롱 등 <u>행위자</u>가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및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원면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p> <p>① 법원행정처장은 성희롱 등 관련 사건의 조사 결과 성희롱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u>행위자</u>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2가지 이상의 조치를 병행하거나 제15조 제1항의 징계절차와 병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의 촉구 2. 성희롱 등 예방교육 수강 권고 3. 심리상담 권고 4. 피해자와 <u>행위자</u>의 사무분담 조정 5. 피해자와 <u>행위자</u>의 업무 공간 분리 6. 그 밖의 성희롱 등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p>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법원행정처장은 성희롱 등 <u>행위자(2차 행위자 포함)</u>가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및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원면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p> <p>① 법원행정처장은 성희롱 등 관련 사건의 조사 결과 성희롱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u>행위자(2차 행위자 포함)</u>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2가지 이상의 조치를 병행하거나 제15조 제1항의 징계절차와 병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의 촉구 2. 성희롱 등 예방교육 수강 권고 3. 심리상담 권고 4. 피해자와 <u>행위자(2차 행위자 포함)</u>의 사무분담 조정 5. 피해자와 <u>행위자(2차 행위자 포함)</u>의 업무 공간 분리 6. 그 밖의 성희롱 등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현 행	개 정 안
<p>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자와 <u>행위자</u>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p> <p>③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성희롱 등 관련 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피해자와 <u>행위자</u> 등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 ⑤ (생략)</p>	<p>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자와 <u>행위자(2차 행위자 포함)</u>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p> <p>③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성희롱 등 관련 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피해자와 <u>행위자(2차 행위자 포함)</u> 등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다. 2021년 양성평등지원관(법관) 워크숍 개최(2021. 7. 12.)

■ 개요

- 취지 ⇨ 전국의 양성평등지원관이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법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양성평등 저해 사례를 논의하고 이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
- 일시 ⇨ 2021. 7. 12.(월) 14:00 ~ 18:00
- 방식 ⇨ VidyoConnect를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
- 참석자 ⇨ 전국 양성평등지원관(법관) 87명
 - 특히 **2021년에는 대법원장이 직접 워크숍에 참석**하여 법원 내의 양성평등 제고 및 양성평등지원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
 -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말씀

“법원 내에서 양성평등 저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양성평등지원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양성평등지원관들께서 관련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고 전문적인 지원, 상담 조치등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워크숍프로그램이 양성평등지원관으로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 위주로 알차게 구성되어있어 그러한 역할을 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참고 사진



▣ 세부 주제 요지

- 제1주제 ‘2021 성희롱 등 사건의 처리 절차’ (김윤선 부장판사)
 - 양성평등지원관 제도의 도입배경과 취지, 각급 법원에서 성희롱 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사건처리절차 및 관련 지침, 양성평등지원관으로서의 역할 등을 소개
- 제2주제 ‘가상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법원 내 성평등 현실’ (김이경 판사)
 - 가상사례를 통해 법원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성차별·성희롱 사례를 제시하고 유형별로 이를 분류하여 양성평등지원관이 이를 참고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적절하고 전문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
- 제3주제 ‘법원 내 직원 고충처리 현황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 (이현미 복지후생담당관)
 - 전국 법원의 직원 관련한 성희롱 등 고충처리현황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최근 규정이 개정된 2차 피해 방지제도에 대하여 소개



- 제4주제 ‘성차별 · 성희롱 피해자의 심리이해와 양성평등지원관의 역할 등’ (신진희 변호사)
 - 성희롱·성차별 피해자를 위한 다수의 변론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성희롱·성차별 피해자의 심리 특성과 상담 시 피해자의 심리를 적절히 이해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강의

라. 일과 삶 균형을 위한 업무용 가상PC 배정 확대

▣ 개요

- 성평등 제고를 위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정책실행 TF 운영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0년부터 육아기 법관에 대한 업무용 가상PC 배정이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짐
 - 2020년에는 총 247명에게 배정되었음
- 육아기 법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법관, 본인이나 임신한 법관 포함) 중 희망자에게 일과시간 이후 야근, 주말근무를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용 가상PC를 배정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조화를 도모함

▣ 2021년 배정 현황

- 2021. 2. 22. 코트넷 공지(법원행정처 차장 명의)를 통한 신청 접수
 - 신청기간: 2021. 2. 22. ~ 2021. 3. 2.(9일)
- 2021. 3. 총 339명 배정
 - 사용기간: 2021. 3. 22. ~ 2022. 3. 21.
- 2021. 8. ~ 9. 추가 신청 접수 후 963명에게 확대 배정함



마. 기타(지속 추진 사항)

1) 전국 법원(지원 포함) 양성평등지원관 선정

▣ 개요

-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피해자 보호 및 제반 조치를 위하여 각급 법원(지원 포함)에 양성평등지원관을 지정(각 법원의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법원에서 선출하거나 지정)

▣ 지정 현황

- 법관: 2021. 4. 기준 전국 법원(지원)에 144명의 양성평등지원관을 지정
- 직원: 2021. 7. 기준 전국 법원(지원)에 253명의 양성평등지원관을 지정

▣ 각급 법원(지원) 양성평등지원관의 역할

- 피해자에 대한 조력자: 전체적인 처리절차를 숙지하고 피해자에게 상담 제공 및 처리절차·피해회복지원 등 사항 안내
-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비공식적 처리절차의 주재 및 필요 시 공식적 처리절차와 연계

▣ 각급 법원 양성평등지원관 전문교육 교육비 지원

- 성희롱 등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 상담,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및 조력인 역할 등 양성평등지원관의 역할 강화
- 코로나19 상황으로 여성가족부에서도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급 법원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온라인 교육을 통한 양성평등지원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2020년부터 지원)
- 2021년 각급 법원 전문교육 이수자 및 교육비 지원 현황



- 전국 28개 법원 40명 이수(3,600,000원 지원)

2) 온라인 신고센터,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 양성평등지원관을 방문하거나 대면하여 피해 사실을 상담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고센터(전국 단위), 사이버 신고센터(각 법원 단위)를 운영
- 2020년에 이어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된 상태에서 온라인 신고센터, 사이버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중

3) 법원행정처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운영

■ 개요

-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 등 사건 심의를 담당하는 양성평등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법원행정처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원을 위촉함(2020. 8.)

■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개요

- 당연직 위원장: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 2021. 2. 「법원조직법」 및 「법원행정처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법원행정처 소속의 윤리감사관실이 대법원 소속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종래 “윤리감사관”에서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으로 변경
- 위원 6명: 법관, 직원, 외부전문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 기위촉되었던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2022. 8. 7.자 만료) 위원 재위



축 및 신규 위원 위촉 필요

▣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역할

- 양성평등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 등 사건의 처리와 성희롱 등 방지를 위한 정책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함
- 규정에 의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하여는 반드시 양성평등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실질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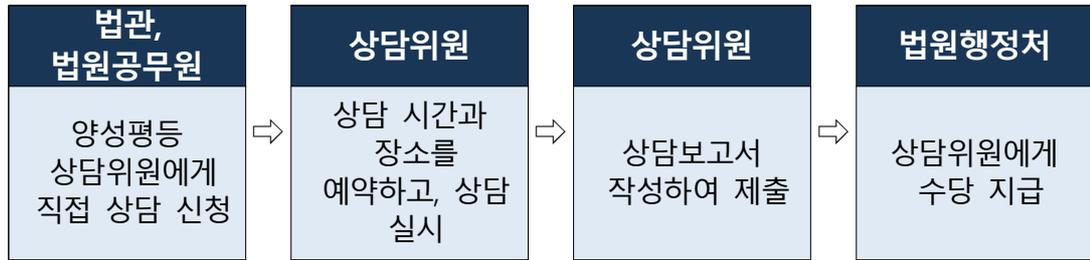
- 양성평등심의위원회 구성 이후 위원회 회의가 소집된 적 없는바, 2021년 한 해 동안 법원 내의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 등 관련사건이 접수되거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다만 제13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중요성,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인사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양성평등 상담위원 제도 활성화

▣ 개요

- 양성평등과 관련된 문제로 외부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자 하는 법원 직원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전문의 또는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2020년에 상담위원의 재위촉 또는 신규 상담위원을 위촉(신규 상담위원 3명 및 재위촉 상담위원 22명 위촉)하고 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

▣ 구체적인 상담절차



▣ 상담 현황

- 임상심리전문가에 의한 양성평등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향후에도 적시에 필요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트넷 게시판, CourTV 등을 통한 지속적 홍보 및 노력을 할 계획임

바. 22년 대법원 예산에 성평등 관련 예산 확보

▣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예산 확보(3,006백만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업지원¹⁾

▣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예산 증액

- 직장인 지원프로그램(증 31백만원)²⁾, 직장보육시설 확충 및 보조금 증액(증 1,546백만원)³⁾

1) 관행적 보조사업이라는 이유로 19년부터 21년까지 매년 감액되어 왔음. 22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기재부 1차 심의과정에서 전년대비 10% 감액되었으나, 한부모 가정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성평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소요임을 설득하여 최종안에서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였음

2) 법원 구성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 및 원격교육으로 가족간 갈등이 증가하자 해당 프로그램 수요도 증가. 22년 예산안을 증액하여 가정생활 및 육아에 있어 父母의 성평등 도모

3) 남양주지원 어린이집 추가 개원에 따른 증액소요로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공사비 약 13억원 및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보조금 약 2억원을 증액하였음.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적 설치요건에 미치지 못하여 재원확보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나, 본 예산을 성인지 예산 선정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 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점을 설득하여 기재부 3차 심의때 반영하였음



2. 법원 내 전문분야연구회의 2021년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내용

가. 2021년 젠더법 연구회 주요 성과

1)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법관연수

▣ 개요

- 일시 : 2021. 5. 3. (월) ~ 2021. 5. 4. (화)
- 장소 : 사법연수원 본관동
- 참여인원 : 총 43명(오프라인 19명, 원격 24명)의 연수 신청 법관

▣ 일정표

월일 시간	5. 3.(월)	5. 4.(화)
오전	연수일정 및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유의사항 안내 (09:50~10:00)	제1세대 여성법관의 리더십: 김영란 위원장과와의 간담회 (10:00~11:40) ○ 진행: 신숙희(판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성폭력범죄의 신동향 (10:00~11:40) ○ 전아람(대법원 재판연구관)	
중식		
오후	젠더 영화 감상 및 토론 -긴즈버그 대법관을 추모하며- (14:00~17:00) ○ 영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BG) : 나는 반대한다」 감상 및 토론	‘우아하게 이기는 여자’ (14:00~15:40) ○ 윤여순(전 LG 아트센터 대표)
		종합토론 : 여성법관의 리더십이란? (16:00~17:00) ○ 연수법관 전체
		종강식

▣ 연수 주요 내용



- **성폭력범죄의 신동향**

- 최근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중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참여 법관들의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짐

- **젠더 영화 감상 및 토론 - 긴즈버그 대법관을 추모하며**

- 영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 나는 반대한다’를 소강당에서 감상하면서 긴즈버그 대법관의 학업이나 직업적 성취, 대법관으로서의 업적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삶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김영란 위원장과의 간담회 - 제1세대 여성법관의 리더십**

- 미리 연수 참가 법관들로부터 질문을 받아 비슷한 유형으로 나눈 다음 신속히 젠더법연구회 전 회장의 진행 아래 김영란 위원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
- 여성 리더십이 나아갈 방향으로 대안적 리더십을 제안하고, 여성 기관장으로서의 경험, 여성 대법관으로서의 경험,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의 어려움 등을 공유

- **전 LG 아트센터 윤여순 대표 강의 - ‘우아하게 이기는 여자’**

- 만 41세 늦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LG의 첫 여성 임원으로, 성별로 주목받기도 하고 거부당하기도 한 초창기 여성 리더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하고, 참여 법관들이 직접 질문하고 답변도 들을 수 있는 시간

- **종합토론**

- ‘여성법관의 리더십’이란 주제로 참여 법관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됨

2) 2021. 11. 젠더판례백선 발간

▣ 개요

- ‘젠더판례 다시 읽기’ 발간 1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연구회가 선정, 연



구한 젠더판례들에 더하여 젠더 이슈에 관한 판례의 변화와 발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재판 업무에 지침이 될 만한 보편성과 가치를 가진 젠더 관련 판례를 수록한 ‘젠더판례백선’ 발간을 기획함

▣ 경과

- 2020. 11. 초 공모를 통하여 발간 실무를 지원할 연구회 운영진을 포함하여 총 30명으로 구성된 젠더판례백선 발간위원회 발족
- 2021. 1. 가사, 민사, 형사, 헌법행정의 4분과로 팀 편성 후 각 분과별 판례 목록 선정 완료
- 2021. 3. 판례백선에 포함할 판례 최종 선정 후 집필진 공모를 마치고, 2021. 7. 원고 작성 및 2차 교정 완료
- 2021. 9. 온라인 가편집본 교정 후, 2021. 11. 젠더판례백선 최종 출간
- 2022. 2. 26. 한국젠더법학회와 공동하여 『21’ 젠더판례백선 출간기념 세미나, 젠더판례 토크아보기』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출간 성과를 연구회 회원들 및 외부 관련 학회와도 공유

3) 성인지 교육 관련 활동

▣ 개요

- 각급 법원 <성희롱 예방교육>과 사법연수원의 <성인지 강의> 등 다양한 형태의 성인지 교육이 늘어나면서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강사진 발굴, 노하우 공유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8년 교육연구팀 신설

▣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진 모임

- 수집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소모임 게시판을 통해



공유하며 활발한 논의를 통해 수정 및 발전시키는 작업을 하여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교육에 제공함

- 사법연수원에서 개최하는 경력별연수, 법원장연수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인지 강의> 강사진을 발굴하고 서로의 강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 좋은 강의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모임을 수시 개최함
- 2021년 교육연구팀 주관 하에 이루어진 성인지 강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음

일시	연수명	강의담당자
2021. 2. 5.	사법행정발전을 위한 세미나 - 사법행정권자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	김이경
2021. 2. 5.	신임법관 연수	강지현, 김시원
2021. 2. 16.	신임지원장 연수 - 사법행정권자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	김이경
2021. 3. 4.	성폭력범죄전담재판부연수	전아람
2021. 4. 30.	신임고등법원판사 연수	이은혜
2021. 6. 15.	경력별 연수 1-1	정현희
2021. 6. 22.	경력별 연수 1-2	강정연
2021. 7. 6.	경력별 연수 2-1	정현희
2021. 7. 13.	경력별 연수 2-2	강정연

- 2021. 7. 12. 법원행정처 실시 양성평등지원관 워크숍 강사 추천 및 강의 지원 - ‘가상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법원 내 성평등현실’ (강의 담당자 김이경)

4) 2021년 뉴질랜드 세계여성법관회의 참가



▣ 개요

- 개최지 : 뉴질랜드
- 회의기간 : 2021. 5. 7. (금) ~ 5. 9. (일)
- 회의방식
 - 코로나19로 인해, 뉴질랜드 및 뉴질랜드에 입국 가능한 국가의 참가자들은 대면 참석, 나머지 국가의 참가자들은 온라인 참석
 - 일부는 사전 녹화 방식으로, 일부는 실시간 영상연결 방식으로 진행함
 - 대한민국 참가자들은 온라인 참석하였는데, 2021. 5. 7.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와 2021. 5. 8. 취약계층 세션은 대법원 회의실에 모여서 함께 참가함

▣ 주요 내용

- 3일 동안 총 14개의 세션으로 진행
 - 개최국인 뉴질랜드 고유의 원주민 문제를 큰 비중으로 소개한 것이 인상적이었음.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최국 고유의 문제 및 이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을 보여주는 것도 국제 행사에서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된 계기가 됨
 - 개발도상국이라고 여겨지는 파키스탄에서 성인지 관점의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에티오피아와 태국에서도 각각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 탄생함. 성인지 관점의 도입 및 최고법원의 여성법관 비율을 높이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흐름이라는 것을 확인함
 -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법관 2명이 출근길에 표적 테러로 사망하였고, 회의 후 여학교를 표적으로 한 테러 공격이 일어나 소녀들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 세계여성법관회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법관, 교육받은 여성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에 대해 비판하고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함



는 결의안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동의의견을 모으고 있음

- 우리나라 판사의 발표(김선화 판사)로, 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에 관해 진지한 고민을 한 대한민국 재판부의 노력이 세계에 알려짐

나. 2021년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주요 성과

1) 2021년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설립

▣ 명칭

-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 설립 경과

- 2021. 2. 2. 코트넷 커뮤니티 개설
- 2021. 5. 7. 창립총회 개최
- 2021. 11. 18. 전문분야연구회 지정

▣ 설립 취지

- 형사법 분야 중 특히 성범죄와 관련하여 수사에서부터 재판을 아우르는 절차와 법리, 이에 더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함

2) 창립기념 공개토론회(2021. 10. 22.)

▣ 개요

- “디지털환경과 성범죄의 진화 - 디지털성범죄와 성매매를 중심으로”
- 일시: 2021. 10. 22.(금) 19:00
- 장소: 서울동부지방법원 11층 중회의실 및 온라인 ZOOM
- 참여인원
 - 사전 온라인 참여 신청자 370여명(법관 70여명, 검·경 및 변호사 100여명,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 130여명, 대학, 연구자 등 40여명, 활동가 20명, 언론인 10여명)

- 토론회 당일 Zoom 접속 연인원 426명 (세션별 동시접속자 200여명)

▣ 내용

- 일정표

월일	시 간	주 제	지정토론
10. 22. (금)	19:00 ~ 20:00	<p>디지털증거의 특수성과 형사절차상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있어 관련성 문제/오정희, 김석순 검사 ○ 디지털성폭력에서 증거 데이터의 취급/박수연 활동가 	김진원 판사 차주희 판사
	20:00 ~ 21:00	<p>n번방 사건을 계기로 돌아본 디지털성범죄의 쟁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의 법적 이해와 구성/박수현 판사 ○ 디지털성범죄의 연혁과 실태/백가을 활동가 ○ 조직화·체계화된 수익목적 디지털성범죄/연선주 판사 ○ 디지털성범죄의 유형 및 관련법률 개관/정서현 판사 ○ 디지털성범죄의 재판절차상 특수성/김기수 판사 ○ 디지털성범죄의 양형상 문제/박기쁨 판사 	김지선 교수 이수정 교수
	21:00 ~ 22:00	<p>성매매, 그리고 디지털환경의 개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민, 안은지, 임미경 판사 	김주희, 신박진영, 이은진, 장다혜, 조진경

- 연구회 회원과 외부자문위원들이 함께 발제 및 토론
- 사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발제문과 지정토론문을 엮은 자료집 파일을 온라인 송부
- 대부분의 참여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하였음에도 시의성 있는 토론 주제에 대하여 3시간에 걸쳐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짐



다. 긴급공개토론회(2022. 1. 10.)⁴⁾

▣ 개요

- 주제: 미성년성폭력피해자 영상녹화진술 관련 실무상 대책 논의
- 일시: 2022. 1. 10.(월) 19:00
- 장소: 온라인 ZOOM
- 참여인원
 - 사전 온라인 참여 신청자 580여명(법원 관계자 90여명, 검, 경, 진술분석관, 진술조력인 등 수사기관 관계자 40여명, 변호사 100여명, 활동가 100여명, 기자 15명, 해바라기센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200여명)
 - 토론회 당일 Zoom 접속 연인원 530여명 (동시접속자 300여명)

▣ 내용

- 일정표

월일	시 간	주 제	지정토론
1. 10. (월)	19:00 ~ 19:50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영상 진술 특성 ○ 김지은(대구해바라기센터 아동 부소장) ○ 조현주(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장옥선(진술조력인)
	19:50 ~ 20:40	헌재결정의 내용과 의미 ○ 김동현(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오선희(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20:40 ~ 21:30	수사와 재판의 실무상 대책 ○ 오정희(검사, 서울고등검찰청) ○ 박기쁨(판사, 사법정책연구원)	/
	21:30 ~ 22:00	종합 토론 ○ 사회: 조정민(판사, 부산지방법원)	

4) 본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2021년” 사업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기는 하나, 2022년 사업 중 보고 시점에서 이미 실시된 사업으로서 참고로 함께 보고할 필요가 있어 본 보고서에 포함하였음



-
- 성폭력처벌법상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의 의미와 실무상 대책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긴급 토론회 개최
 - 사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발제문과 지정토론문을 엮은 자료집 파일을 온라인 송부
 - 위헌결정 이후 2주 만에 개최된 시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의성 있는 토론 주제에 대하여 3시간에 걸쳐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짐